

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서

사회복지법인 신애원

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1길 20-16

TEL.055.852.3748

FAX.055.853.4695

예산총칙

제 1 조 1.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 2022년(2022.01.01 ~ 2022.12.31)기간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에 의한다.

제 2 조 1.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99,206,528원으로 하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세입·세출 예산서와 같다.

2. 세입 99,206,528원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- 기 타 사 업 수 입 :	0원
- 지정후원금 수 입 :	9,000,000원
- 비지정후원금수입 :	25,000,000원
- 전년도 이월금 :	원
- 전년도이월금(후원금):	65,091,528원
- 이월사업비 수입 :	0원
- 불용품 매각대 :	0원
- 잡 수 입 :	115,000원

3. 세출 99,206,528원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- 사 무 비 :	56,829,159원
- 재 산 조 성 비 :	15,123,369원
- 사 업 비 :	150,000원
- 전 출 금 :	25,000,000원
- 잡 지 출 :	1,100,000원
- 예 비 :	1,004,000원

제 3 조 1.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
제 4 조 1. 법인이사회의 예산승인을 받기 전에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예산의 집행은 직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, 그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5 조 1. 각 계정과목 내 항목의 예산집행은 당해 계정과목의 승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목간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1. 예산집행의 결정권한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의 규정에 의한다.

제 7 조 1. 사업회계의 수입금액이 계상된 수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수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경비는 당해 초과 수입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제안 설명

제 1 조 1.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 2022년(2022.01.01 ~ 2022.12.31)기간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에 의한다.

제 2 조 1. 세입.세출 예산 총액은 99,206,528원으로 하며 세입.세출의 명세는 세입.세출 예산서와 같다.

2. 세입 99,206,528원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사유 : 변동내역없음.	- 기타사업 수입 :	0원으로	변동사항없음.
사유 : 변동내역없음.	- 지정 후원금 수입 :	9,000,000원으로	변동사항없음.
사유 : 후원금 수입 감소.	- 비지정 후원금 수입 :	25,000,000원으로	변동사항없음.
사유 : 변동내역없음.	- 전년도 이월금 :	0원으로	변동사항없음.
사유 : 변동내역없음.	- 전년도 이월금(후원금) :	65,091,528으로	변동사항없음.
사유 : 후원금 수입 증가.	- 이월 사업비 :	0원으로	변동사항없음.
사유 : 변동내역없음.	- 불용품 매각대 :	0원으로	변동사항없음.
사유 : 변동내역없음.	- 잡 수 입 :	115,000원으로	변동사항없음.
사유 : 변동내역없음.			

3. 세출 99,206,528원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사유 :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운영비 예산 감소.	- 사 무 비 :	56,829,159원으로	5,150,000원 감소.
사유 : 시설비 예산증가.	- 재 산 조 성 비 :	15,123,369원으로	변동사항없음.
사유 : 결연후원금 지급사업비 시설후원금 대체.	- 사 업 비 :	150,000원으로	150,000원 증가.
사유 : 변동내역없음.	- 전 출 금 :	25,000,000원으로	5,000,000원 증가.
사유 : 잡수입 후원금 증가	- 잡 지 출 :	1,100,000원으로	변동사항없음.
사유 : 후원금 예금이자 수입	- 예 비 비 :	1,004,000원으로	변동사항없음.

제 3 조 1.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
제 4 조 1. 법인이사회의 예산승인을 받기 전에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예산의 집행은 직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, 그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5 조 1. 각 계정과목 내 항목의 예산집행은 당해 계정과목의 승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목간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1. 예산집행의 결정권한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의 규정에 의한다.

제 7 조 1. 사업회계의 수입금액이 계산된 수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수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경비는 당해 초과 수입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2022년 신애원[법인] 제2차 추정예산 총괄표

세입					(단위:원)				
계정과목			1차 추정 예산 (A)	2차 추정 예산 (B)	증감(B-A)	산출근거			
관	항	세목							
사업수입	사업수입	기타사업수입	0	0	0	기타사업수입 거래 내역 참조.			
		지정후원금	9,000,000	9,000,000	0	지정후원금 후원금 거래내역 참조.			
		비지정후원금	25,000,000	25,000,000	0	비지정 후원금 거래 내역 참조.			
		전년도이월금	0	0	0	1. 전년도 이월금 거래 내역 참조.			
이월금	이월금	전년도이월금(후원금)	65,091,528	65,091,528	0	0	내역 참조.		
		이월사업비	0	0	0	1.이월사업비.			
		불용품매각대	0	0	0	1.불용품 매각대 수입.			
		기타예금이자수입	15,000	15,000	0	1.기타예금이자수입.			
접수입	접수입	기타접수입	100,000	100,000	0	1.기타 접수입.			

2022년 신애원[법인] 2차 추경 예산 세입명세서

계정 과 목			1차 추경 예산 (A)	2차 추경 예산 (B)	증감(B-A)	내역
관	항	세목				
사업수입	사업수입	기타사업수입	0	0		1.기타사업 수입(통장 거래내역 참조)
후원금수입	후원금수입	지정후원금	9,000,000	9,000,000		1.지정 후원금 수입(통장 거래내역 참조)
		비지정후원금	25,000,000	25,000,000		1.비지정 후원금 수입(통장 거래내역 참조)
		전년도이월금	0	0		1.기타사업수입 이월금
이월금	이월금	전년도이월금(후원금)	65,091,528	65,091,528		1.전년도 후원금 이월금
		이월사업비	0	0		1.이월사업비
		불응품매각대	0	0		1.불응품 매각대 수입.
접수입	접수입	기타예금이자수입	15,000	15,000		1.기타예금이자수입
		기타접수입	100,000	100,000		1.기타 접수입
세입			99,206,528	99,206,528	0	

2022년 신애원[법인] 2차 추경 예산 세출명세서

계정 과 목			1차 추경 예산 (A)	2차 추경 예산 (B)	증감(B-A)	내역
관	항	세목				
사무비	인건비	제수당	7,000,000	7,000,000		1.법인 임.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(직종.직급별로 일 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,야간근무수당,휴 일(무수당)등) 및 기타 수당.
		기타후생경비	4,500,000	4,500,000		1.법인 임.직원의 건강진단비,기타 특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
		기관운영비	3,500,000	3,500,000		1.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 비.
	업무추진비	직책보조비	8,500,000	8,500,000		1.법인 임.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
		회의비	4,000,000	4,000,000		1.법인의 이사회,후원회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 는 제경비
		여비	2,000,000	2,000,000		1.법인 임.직원의 국내,외 출장 여비
	운영비	수용비 및 수수료	12,222,335	7,072,335	-5,150,000	1.사무용품 및 물품구입:800,000원*12개월 = 4,450,000 원 구입,운송비,통행료,주차료,등기료등 = 2,000,000원 1.우편료, 전신전화료,전기료,상하수도료,가스료및오물수 거료
		공공요금	5,455,410	5,455,410		1.자동차세, 협회가입비,화재보험료,자동차보험료,기타보 험료등
		제세공과금	4,500,000	4,500,000		1.차량주유비 50,000원*월3회*12개월 = 1,800,000원 2. 차량장비유지비 = 800,000원 3.차량소모품비 = 901,414
		차량비	3,301,414	3,301,414		1.보일러및 난방시설 연료비
		연료비	6,000,000	6,000,000		1.시설직원 상용피복비,금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 지 아니한 경비
		기타운영비	1,000,000	1,000,000		1.시설 신.증축비 및 부대경비, 그 밖에 시설비
		시설비	5,000,000	5,000,000		1.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, 토지.건물 그밖에 자산 의 취득비.
재산조성비	시설비	자산취득비	5,500,000	5,500,000		1.시설및 건축설비(구축물,기계장치),공구,기구,비품수선 비,그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
		시설장비유지비	4,623,369	4,623,369		1.결연후원금 지급사업비
	일반사업비	결연후원금 지급사업비	0	150,000	150,000	1.결연후원금 지급사업비
	전출금	신애원 시설 전출금(후원금)	20,000,000	25,000,000	5,000,000	1.신애원 시설 전출금.
	감지출	감지출	1,100,000	1,100,000		1.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,사제금,소송경비등
예비비 및 기타	예비비 및 기타	예비비	1,004,000	1,004,000	0	1.예비비
세출			99,206,528	99,206,528	0	